

아이슬란드 商標制度解

金 允 培
〈國際工業所有權研究所長・辨理士〉

1. 制度의 特徵

아이슬란드의 商標法은 全文18條의 簡潔한 法律로 되어 있으며 그 內容은 大體로 스웨덴의 商標法과 類似한 點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同國의 商標制度는 基本的으로는 登錄主義를 採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登錄公告後 1年 以內에 先使用者로부터 異議의 訴訟이 提起되었을때는 등록이 無效가 되는 등 商標의 現實的 使用을 尊重하는 使用主義의 一面도 엿볼 수가 있다.

同國은 아직 파리同盟協約에 加盟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商標법에 있어서는 特許法과는 달리 內外國人의 平等을 認定하고 있지 않아 外國人의 商標에 관한 權利能力은 原則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大統領의 命令에 따라 相互主義의 留保를 隨伴한 內國民待遇를 인정하고 있다.

政府의 方針으로 이와같은 命令은 먼저 그것에 앞서서 相對國과의 協定이나 覺書등에 의하여 商標權의 相互保護를 約束한 때에만 發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이슬란드國內에 商標의 出願과 登錄에 따르는 權利能力을 行使하려면 政府間의 協정이나 覺書交換등의 節次가 先行되어야 하며 同國이 파리協約에 加盟되었을 때에는 自動적으로 効力을 갖게 된다.

2. 登錄받을 수 있는 者 및 商標

商標의 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는 國內에서 製造業, 手工業, 農業, 鑛業, 商業 등의 事業을 營爲해야하며 大統領의 命令에 의한 指定이 있을 때는 그 指定을 받은 나라의 國民으로서 앞서 말한 事業을 營爲하는 者이면 된다.

이와같은 外國人의 登錄出願節次 및 이 以外의 절차, 例를 들면 拒絕査定不服訴訟 또는 訴訟, 商標權侵害의 訴訟등의 절차에 관해서 別段의 規定이 없는 限 內國民과 똑같이 待遇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登錄을 받을 수 있는 商標는 公衆去來에 있어 自己의 業務에 관계되는 商品을 他人의 商標와 識別하기 위한 標章이어야 한다.

이와같은 標章은 어떤때는 自己의 姓名, 名稱 또는 자기의 所有地名일때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登錄을 받지 않더라도 商標使用의 獨占的 權利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商標는 商品에 관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서비스마크(營業標)는 包含시키지 않고 있으나 立體마크, 音樂마크 등에 대하여는 明確한 規定이 없고 登錄使用의 態樣, 商標權의 內容등으로 解釋한다면 商標 또는 商標의 包裝에 붙일수 있는 마크만이 登錄의 對象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商標가 登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要件도 充足해야 할 必要가 있다.

(1) 商標는 하나의 디자인을 形成하는 程度로 顯著하지 않은 圖形, 文字 또는 語句만으로 된 것은 안된다.

다만 商品을 限定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商品을 위하여 特別히 考案된 名稱으로서 그 商品의 出處, 形狀, 用途, 品質 또는 價格을 表示한 것

外國制度紹介

이 아닐 때에는 그와같은 名稱을 表示한 語句는 無妨하다.

즉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特別顯著性이 要求되는 것이나 이 현저성은 하나의 디자인을 形成하는 정도의 것이면 된다.

通常 以外の 意味에 쓰이고 있는 語句를 使用하는게 지나지 않는 商標는 등록을 拒絶한다고 보면 된다.

(2) 상표가 出願人 以外の 者の 姓名이나 名稱 또는 所在地名을 包含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에 있어서 그 者の 承諾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商標自體가 具備하지 않으면 아니될 要件일 뿐만 아니라 出願要件이 되기도 한다. 普通有 有名人 또는 法人姓名이나 名稱이 문제가 되어 왔었다.

(3) 상표가 國家의 紋章, 官의 記章을 包含해서는 안된다.

(4) 상표가 醜惡한 表示를 포함해서도 안된다.

(5) 상표가 他人의 名義로 이미 등록되거나 또는 出願된 商標와 同一하거나 類似해서는 안된다.

다만 商品을 限定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의 상표가 각각 다른 商品을 指定하고 있을 때에는 無妨하다.

3. 出願節次

商標를 登錄出願하려고 하는 者는 그 要旨를 記載한 出願書에다 返信料를 添付하여 特許廳登錄官에게 郵送하거나 直接 提出하여야 한다.

출원서에는 상표를 明瞭하게 表示함과 아울러 자기의 姓名, 名稱, 職業, 住所를 詳細히 記載하고 상표를 어떤 種類의 商品에 限定시킬 때는 그 要旨를 記載해야 한다.

출원서의 제출과 同時에 다음에 揭記하는 것을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

(1) 가로 10cm, 세로 15cm 以內的 商標見本 3通

(2) 상표의 印刷에 適合한 商標見本과 같은 크기의 印版 2個

(3) 登錄과 公告에 필요한 40크로네의 手數料 이와같이 出願書가 提出되면 특허청의 등록費는 遲滯없이 接受한 날을 記載하여 出願書受理

의 通知書를 출원인에게 傳達 또는 郵送하게 되고 통지서에는 상표를 표시한 書面 1通을 添付해야 하는 것이다.

外國인이 出願할 때에는 上記의 것 以外에 本國에서 當該商標가 登錄되어 있는 要旨의 證明書 및 國內代理人의 委任狀을 添付해야만 한다.

또한 大統領命令으로 優先權의 主張이 認定되는 경우에 있어서 外國인 出원자가 우선권을 主張하기 위해서는 本國에서의 出願日에 관한 證明書를 提出할 必要가 있다.

4. 審査 및 登錄

登錄官이 願書를 受理하면 먼저 遲滯없이 願書受理通知를 出원인에게 보내게 되고 다음에 當該商標가 不受理事項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與否를 審査한다.

출원이 拒絶되는 것일 때는 그 理由를 添付하여 文書로서 出원인에게 거절통지를 하게 된다.

출원인은 拒絶理由가 正當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3個月 以內에 大統領에게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訴願을 할 수가 있고 訴願의 裁決에 대해서는 다시 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가 있다.

한편 출원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商標는 商標登錄原簿에 등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出願公告나 異議申請制度는 없어 상표의 등록이 完了되면 遲滯없이 그 要旨를 公報에 揭載하여 아이슬란드國內에 公告하고 每年末에 官報의 年間登錄公告欄에 揭載하게 된다.

5. 登錄의 更新

登錄의 更新은 登錄日로부터 10年以內 또는 最後의 更新日로부터 10年이내에 出원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保護効力은 잃게 된다.

登錄官은 등록상표의 所有者나 그 代理人에 대하여 適法한 기간내에 出원 또는 更新을 하지 않았을 때는 保護의 効力을 잃는다는 要旨를 書面郵便으로 通知하게 되며 그 통지는 10년의 期間滿了前 4個月까지에 當事者가 通知한 住所에 送付된다.

따라서 등록을 更新하려 하는 者는 最初 出願할 때의 規定에 따라 作成한 願書를 提出하고 同時에 見本 1通 및 國庫에 納入할 10크로네의 更新登錄料를 내야 한다.

또한 商標更新이 出願人 以外の 者の 名義로 등록 되었을 때는 그 출원인은 그 상표에 관한 權利를 證明하는 書面을 提出해야 한다.

更新은 遲滯없이 商標登錄原簿에 등록되고 登錄官은 新商標의 출원에 關해서 受理했다는 內容의 決定通知書를 交付하게 된다.

한편 등록관은 출원의 要件이 不備되었다고 認定되면 상표의 更新을 拒絕하며 이 거절에 대한 不服은 法院에 訴願할 수가 있다.

6. 無効 및 取消

國家의 紋章, 記章 또는 公序良俗에 違反되는 商標가 등록되었을 때는 大統領은 그 등록을 無効로 한다는 要旨의 命令을 하며 그 명령의 適法性 與否는 法院의 判決로서 가름한다.

또한 特定の 去來分野에 있어서 通常 쓰이고 있는 標章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때는 그 거래에 從事하고 있는 者는 그 등록의 取消을 要求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그 상표의 등록이 他人의 權利를 侵害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취소는 법원의 判決에 따른다.

그리고 先使用者의 출원이 類似商標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출원하여 등록된 商標所有者를 대상으로 訴를 提起할 수가 있는데 그 때에는 자기의 商標가 最初로 使用했으며 相對側은 그 후에 상표를 採用했다는 立證만 하면 법원의 判決로서 취소가 되고 새로운 節次를 밝아 자기의 상표권을 認定받을 수가 있다.

다만 이때에는 登錄公告日로부터 1年以內에 訴를 提起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상표의 등록이 無효가 되고 登錄商標의 保護期間이 滿了되거나 또는 商標權者로부터 申請이 있을 때에 상표는 商標登錄原簿로부터 抹消되고 그 要旨의 公告가 아이슬란드公報에 掲載된다.

7. 侵害 및 賠償

他人이 自己의 姓名이나 名稱, 自己所有의 不動產名稱, 등록상표를 商品 및 그 包裝에 붙이거나 또는 그와 같이 表示한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權利를 侵害 받는 者는 訴를 提起할 수가 있다.

또한 他人의 商標權이 存在하고 있음을 알면

서 侵害한 者는 100크로네 以上 200크로네 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侵害가 反復될 때에는 懲役에 처한다. 이 경우에 法院은 同時에 發生한 損害를 賠償시키거나 또는 그 商品이나 包裝이 그 者에 所有되어 있으면 違法으로 보고 附着한 상표를 除去하게 하거나 商品, 包裝을 破棄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8. 外國人에의 特例

이 나라에서는 外國人에게 相互主義에 立脚해서 特例를 賦與하는 規定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도 아이슬란드國民에 대하여 同一한 待遇를 해주는 경우에 限해서 大統領의 命令으로 認定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商標登錄에 관한 다음 特別規定에 따라야 한다.

(1) 출원인은 출원인이 當該商標의 保護에 關해서 外國에서 定하여진 條件을 具備하고 있는 要旨의 證明書를 출원과 동시에 提出해야 한다.

(2) 출원인은 레이케비크市法院이 그 상표에 관한 모든 事件을 管轄하는 것에 同意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呼出에 應하는 者로서 아이슬란드 國內에 住所를 갖고 있는 代理人을 指定해야 한다.

(3) 그 商標는 그 外國에 있어서보다 廣範圍 또는 長期間의 保護를 받을 수가 없다.

한편 다음 各號의 規定은 아이슬란드의 商標가 똑같은 權利를 享有하고 있는 外國에서 등록된 상표에 關해 命令할 수가 있다.

(1) 그 상표는 公序良俗을 害치지 않는 限 그 外國에서 認定된 態樣으로 登錄해야 한다.

(2) 그 상표가 外國에서 出願한 날로부터 6個月以內에 登錄官에게 출원한 때에는 그 출원은 다른 출원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그 外國에서 출원한 것과 同時에 한 것으로 看做된다.

(3) 등록이 先出願에 의해 拒絕된 경우에 出願人은 먼저 그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者에 대하여 訴를 提起하고 그 위에 自己가 最初로 그 상표를 사용하였고 相對側은 그 후에 그것을 採用했다는 것을 立證하게 되면 保護를 받게 된 날로부터 6個月以內에 訴를 제기한 때에 限하여 法院은 출원인에게 상표의 獨占的으로 使用할 權利가 있다는 要旨의 判決을 하게 된다.